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32
----------	-----

제출일자 : 2008. 11. 12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우리 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다대 3·4·5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과 내용(안 제2조)

나. 전기요금 납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편성(5,400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08. 10. 20 - 11. 9(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과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하 “전기요금”이라 한다) 전액으로 한다.

제3조(전기요금 납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2조의 전기요금을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비용소요 추계서

□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현황

단지명	소재지	건물동수	입주세대수	보안등 설치수	월 전기료
계	4개 지역	28개동	4,902세대	111개 등	450,000원
다대3지구	다대2동 113-2	5개동	750	11	56,080
다대4지구	다대2동 96-1	10개동	1,920	49	207,370
다대5지구	다대1동 1549-2	12개동	2,107	45	164,830
동백아파트	다대1동 1548-17	1개동	125	6	21,720

※ 연 전기료 : 월 전기료 407,287원 X 12월 = 5,400,000원

□ 연도별 보안등 전기료 소요재원 추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간(원)	450,000	457,200	464,520	471,950	479,500
연간(원)	5,400,000	5,486,400	5,574,240	5,663,400	5,754,000

※ 최근 5년간 보안등 전기료 인상분 8%(연간 1.6%)로 산술 평균하여 산출